

자료번호	A1-2000-0034
자 료 명	기업수준 노사관계 실태 및 의식조사 : 노동자

문1. 귀 사업체의 노조는 현재 어떻게 조직되어 있습니까?

- 1) (산별 연맹/업종별 협의체에 속하지 않은 독자적인) 기업별 노조
- 2) 산별 노조의 지부
- 3) 산별 연맹/업종별 협의체 소속 기업별 노조(산별 연맹체: 산별 노조보다 느슨한 형태로 묶인 기업별 노조의 연합체 수준)
- 4) 지역별 일반노조
- 5) 기타 _____

문1-1. (문1에서 ① 기업별 노조로 응답한 분만 답해 주십시오)

향후 2 - 3년간 귀 사업체 노조의 조직형태에 어떤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 1) 변화가 없을 것이다
- 2) 산별 조직의 지부로 변할 것이다
- 3) 산별 연맹이나 업종별 협의체 소속으로 변할 것이다
- 4) 노조가 없어질 것이다
- 5) 기타 _____

문2. 현재 귀 사업체의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존재합니까?

- 1) 예 2) 아니오

문2-1. (문2에서 ①로 응답한 경우)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조직대상이 다르기 때문 (정규직 대 비정규직, 사무직 대 생산직 등)
- 2) 합병이나 사업양도에 따른 병존 상태
- 3) 기업별 노조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상급 산별 노조의 지부가 새로 사업장에 설립되었기 때문
- 4) 산별 노조의 지부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여기 참여하지 않는 근로자가 새로운 기업별 노조를 설립하였기 때문
- 5) 기타 _____

문3. 2007년부터 사업장 단위에서도 복수노조가 허용됩니다. 귀 사업장에서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 1) 허용되자마자 곧 생겨날 것이다
- 2) 허용된다 하더라도 생겨날 것 같지 않다

문4. 현재 사업장에서 복수노조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1) 2007년까지의 유예기간을 풀고 즉시 시행되어야 한다
- 2) 2007년까지 시간을 두고 대책을 세운 뒤 시행되어야 한다
- 3) 당분간 사업장 수준에서까지 복수노조를 허용할 필요성을 잘 못 느낀다
- 4) 사업장 수준에서는 복수노조를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문5. 복수노조가 허용되어 한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존재한다면, 교섭창구 단일화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창구를 단일화할 필요가 없다
- 2) 창구단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문5-1. (문5에서 ②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한 분만 답해 주십시오)

교섭창구 단일화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노동조합들이 자율적으로 창구단일화를 이루되, 만일 실패한다면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 2) 자율에 의해 창구단일화를 이루되, 만일 실패한다면 단순 다수대표제에 의해 교섭을 실시하여야 한다.
- 3) 자율에 의해 창구단일화를 이루되, 만일 실패한다면 과반수 대표제에 의해 교섭을 실시하여야 한다.
- 4) 자율에 의해 창구단일화를 이루되, 만일 실패한다면 비례대표에 의해 교섭을 실시하여야 한다
- 5) 기타_____

문5-2. (문5-1에서 ②, ③, 혹은 ④에 응답한 분만 답해 주십시오)

대표제의 결정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하십니까?

- 1) 투표 없이 조합원 수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 2) 조합원들의 투표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3) 기타_____

문5-3. (문5-2에서 ②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분만 답해 주십시오)

투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하십니까?

- 1) 중앙노동위원회의 관장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 2) 기업 내 조합원들이 자율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3) 기타_____

문6. 귀사의 노동조합은 앞으로 어떤 형태로 조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산별 연맹/업종별 협의체에 속하지 않은 독자적인) 기업별 노조
- 2) 산별 노조의 지부
- 3) 산별 연맹/업종별 협의체 소속 기업별 노조(산별 연맹체: 산별 노조보다 느슨한 형태로 묶인 기업별 노조의 연합체 수준)
- 4) 지역별 일반노조
- 5) 기타 _____

☞ 아래의 질문들은 산별노조에 관한 질문들입니다. 현재 산별노조에 속하지 않았거나, 산별화 가능성과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만일 산별화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어떤 선택을 하실지 모두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7. 산별노조가 결성된다면 단체교섭의 내용에 대해 지부 노조가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모든 단체교섭내용과 쟁의에 대한 결정권은 산별 노조의 본조가 가져야 한다
- 2) 주요 내용은 모두 산별 노조에서 결정하되, 지부에 일정정도 협약내용에 대한 자율성이 주어질 수 있다
- 3) 산별 노조에서는 최소한도의 기준만 결정하고 임금과 근로조건, 쟁의에 대한 지부의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 4) 산별 노조에서는 정치적인 활동에만 집중하고 지부가 교섭과 쟁의에 관한 결정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문8. 산별 노조가 설립된 경우 사업장 차원에서의 근로자 이해대표제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산별 노조의 본조가 결정권을 가지므로 특별히 사업장 차원의 이해대표제가 필요하지 않다
- 2) 사업장 차원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능력을 강화하고 조합원 복지에 기여하기 위해 기존 노사협의회의 강화가 필요하다
- 3) 사업장 차원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능력을 강화하고 조합원 복지에 기여하기 위해 새로운 노동자 협의체가 설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4) 기타 _____

문9. 현재 산별 노조건설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 1) 기업별 체제를 강화하는 법규정
- 2) 사용자단체의 저항 및 반대
- 3) 기업별 노조의 무관심 및 반대
- 4) 노동조합 최고 상급단체(민주노총 혹은 한국노총)의 능력부족

문10. 산별 노동조합이 조합원 교육과 훈련, 연구기능 확충 등 활동을 위해 기금 등 정부의 지원을 받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산별 노동운동의 자주성이 훼손되므로 정부지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
- 2) 산별 노동운동의 발전과 조합원 복지를 위해 정부지원을 적절히 활용하여야 한다
- 3) 모르겠다

문11. 산별노조 본조의 간부의 선출형태는 어떤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대의원에 의한 간선제
- 2) 전체 조합원 직선제
- 3) 기타_____

문12. 본부와 지부의 조합비 배분은 어떤 비율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본부(지역본부 포함) 대 지부 3:7
- 2) 본부(지역본부 포함) 대 지부 4:6
- 3) 본부(지역본부 포함) 대 지부 5:5
- 4) 본부(지역본부 포함) 대 지부 6:4
- 5) 본부(지역본부 포함) 대 지부 7:3
- 6) 기타_____

문13. 산별 노조에 실업자, 해고자, 직업훈련생, 학생, 퇴직자 등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여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노조법의 주체는 “근로자”이므로 근로자가 아닌 자는 가입시켜서는 안 된다
- 2) 노조법의 주체인 “근로자”를 확대 해석하여 실업자와 해고자는 가입시킬 수 있으나, 나머지 근로자가 아닌 자는 가입시켜서는 안 된다
- 3) 정책결정 참여의 폭과 근로자 범위의 확대를 위하여 위에 제시된 모든 사람을 가입시켜야 한다
- 4) 기타_____

문14. 기업 지부를 인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로자수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300명 이상
- 2) 500명 이상
- 3) 1,000명 이상
- 4) 5,000명 이상
- 5) 기타_____

문15. 다음 질문사항에 대해 귀하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문항에 V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산별 노조와 교섭이 성사된다면"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대체로 그렇지 않다	④ 매우 그렇지 않다
1) 비정규직의 권익보호가 기업별 노조보다 훨씬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2) 노사분규가 증가할 것이다				
3) 근로자 간 형평성이 제고될 것이다				
4) 교섭비용이 감소할 것이다				
5) 노동자들의 정치세력화가 이룩될 것이다				
6) 근로자 복지가 향상될 것이다				
7) 기업차원의 노동자 이해대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8)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감소할 것이다				
9) 노동조합의 교섭력이 증가할 것이다.				
10) 기업의 구조조정을 방해할 것이다.				

☞ 아래의 질문들은 노사자치 구현을 위한 제도·관행의 개선방안 관련 질문들입니다.

문16. 단체교섭과정에서 나타나는 상대방의 교섭태도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1) 매우 만족한다
- 2) 만족한다
- 3) 불만이다
- 4) 매우 불만이다

문17. 불법파업의 주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노조 및 조합원의 준법의식 결여
- 2) 노조집행부가 일반 조합원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여
- 3) 노조 상급단체의 직·간접적 개입
- 4) 사용자의 태도(부당노동행위 등) 때문에
- 5) 현행법이 쟁의행위(파업)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서

문18. 불법파업을 주도하거나 참여한 자는 어떤 책임을 부담해야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형사책임(업무방해죄 등)
- 2) 민사책임(손해배상책임)
- 3) 징계책임(해고 등)
- 4) 위의 1), 2), 3) 중 2개 이상
- 5) 가능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노사관계에 바람직하다

문19. 현행법은 파업 이전에 반드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 2) 필요하고, 실효성도 있다
- 3) 필요하지만 실효성은 없다
- 4) 불필요한 제도다

문20. 현재의 노동쟁의 조정제도가 불필요하거나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노동위원회 조정위원들을 신뢰할 수 없어서
- 2) 조정위원들은 노조나 기업상황을 잘 몰라서
- 3) 조정기간이 너무 짧아서
- 4) 노조나 사측이 조정절차에 소극적으로 임하기 때문에
- 5) 기타_____

문21.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대신에 제 3자(변호사, 노무사 등)에게 분쟁조정을 의뢰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찬성한다
- 2) 찬성한다
- 3) 반대한다
- 4) 매우 반대한다

문22. 교섭요구사항을 사측이 거부하거나 잘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요구관철시까지 쟁의행위를 피하면서 교섭 계속
- 2) 법 절차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우선 조정신청
- 3) 법적 절차에 관계없이 실효행사(쟁의행위) 돌입
- 4) 적절히 타협

문23. 노동위원회에의 조정신청은 누구의 결정으로 합니까?

- 1) 노조대표자 (위원장)
- 2) 조합 상무집행위원회
- 3) 대의원회 또는 조합원 총회
- 4) 교섭위원
- 5) 상황에 따라 다르다.

☞ 아래의 질문들은 노동조합 재정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문24. 조합비는 회사에서 일괄공제(체크오프)하고 있습니까?

- 1) 예 2) 아니오

문25. 조합비는 어떤 방식으로 징수하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항목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정액방식	매월 ()원
정률방식	<input type="checkbox"/> 1) 기본급의 ()%
	<input type="checkbox"/> 2) 통상임금의 ()%
	<input type="checkbox"/> 3) 월급여(상여금 제외)의 ()%
	<input type="checkbox"/> 4) 월급여(정기상여금 포함)의 ()%
	<input type="checkbox"/> 5) 평균임금의 ()%
	<input type="checkbox"/> 6) 임금총액의 ()%
정률 + 정액	정률 ()급의 ()% + 정액 ()원

문26. 조합원 1인당 매월 평균조합비는 얼마입니까? ()원

문27. 노동조합을 운영하는데 조합비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아주 충분하다 2) 충분한 편이다 3) 보통이다
 4) 부족한 편이다 5) 아주 부족하다

문28. 2007년 1월부터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이 금지될 경우 현재의 조합비로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전혀 가능하지 않다 2) 가능하지 않다 3) 보통이다
 4) 충분하다 5) 아주 충분하다

문29. 현재의 전임자 임금을 충당하고 원활한 조합활동을 하기 위한 조합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조합원 1인당 ()원

문30. 상급단체(전국중앙조직 포함)에 납부하는 맹비(의무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아주 부담이 되는 편이다 2) 부담이 되는 편이다 3) 보통이다
 4) 적절한 편이다 5) 아주 적정하다

문31. 귀 노조에서는 재정자립을 도모할 목적으로 노조가 주관하여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사항을 모두 골라 기입하여 주십시오.

- 1) 소비조합(매점, 구판장) 2) 자판기사업(임대 포함) 3) 보험사업
 4) 신용사업(신협이나 마을금고) 5) 복사실, 인쇄자판기 사업 6) 기타사업

문32. 귀 노조에서는 사무집기나 노조사무실 유지비를 어떠한 방식으로 조달하고 있습니까?

- 1) 전적으로 노조예산에서 해결한다
 2) 회사에서 일부 보조를 받는다
 3) 전적으로 회사가 제공한다

문33. 귀 노조 간부의 출장비는 어떠한 방식으로 조달하고 있습니까?

- 1) 전적으로 노조예산에서 해결한다
 2) 회사에서 일부 보조를 받는다
 3) 전적으로 회사가 제공한다

문34. 귀노조에서는 조합비운용 내역을 주로 어떻게 공개합니까?

해당되는 항목에 모두 √표 해주십시오.

- 1) 사업보고서에 공개 2) 대의원회자료에 공개
 3) 총회자료에 공개 4) 노보나 소식지에 공개
 5) 벽보를 통해 공개 6) 별도로 공개하는 매체는 없다
 7) 비공개

문35. 이전 집행부 중 조합간부가 예산운용을 둘러싸고 부정이나 횡령을 하여 불신임당하거나 자진사퇴한 경험이 있었습니까?

- 1) 불신임당하거나 자진 사퇴한 경험이 있다
 2) 불신임이나 자진사퇴로 이어지는 않았지만 조직유지에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다.
 3) 불신임당한 경험이 없다.

문36. 귀하의 노조는 상급노조에 맹비를 내고 있습니까? 해당되는 항목에 √표 해주십시오.

- 1) 할당액 전액을 내고 있다
 2) 할당액의 일부를 내고 있다(납부비율 %)
 3) 할당액을 전혀 내지 않고 있다

문37. 상급노조에 납부하신 맹비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해당되는 항목에 √표 해주십시오.

- 1) 자세한 내용까지 알고 있다
- 2) 대체로 알고 있다
- 3) 잘 모른다
- 4) 전혀 모른다

문38. 노동조합이 재정을 자립하기 위해 추진하여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래의 보기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두 개를 골라 괄호안에 기입하여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1) 지출의 합리화
- 2) 수익사업
- 3) 전임자수 축소 및 기금적립
- 4) 조합비 인상
- 5) 산별노조 건설
- 6) 조직확대
- 7) 조직합병
- 8) 기타_____